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5. 12.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5. 20.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토지관리과장 이 영복)

가. 제출이유

-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전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제1항)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전재)

-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등을 규정함.
-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3. 12. 27. 법률 제4628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김유현 위원장) : 본 조례안은 제정안인데 현재까지는 중개업 분쟁이 있을때 조정해 본일이 있는가?
- 답변(이영복 토지관리과장) :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적극적 조정은 하지않고 진정서가 들어오면 조정차원에서 처리하였습니다.
- 질문(이봉형 위원) : 부동산 매매 분쟁이 상호간 이해대립이 첨예한데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 답변(이영복 토지관리과장) :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하며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코자 합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301

제출년월일 : 1994. 5. 12.
제 출 자 : 마포구 청장

1. 제정이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以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제1항)
- 다.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별첨

4. 제정근거 : 부동산 중개업법(1993. 12. 27 법률 제4628호) 제37조의3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위원 수당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3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공무원(이하 “구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수당등)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에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0.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6. 22.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감사실장 김진택)

가. 제출이유

-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및 행정적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심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중 분쟁의 조정·알선 기능 추가(안, 제2조 제3호)
-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3조 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전재)

○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서울특